

2020. 1. 30.

수 신 : 의 장

제 목 : 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 
안 철회요구

2019. 3. 26. 전석기 의원 외 1명(찬성20명)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고자 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사 유 : 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변경

요 구 자 전 석 기



박 기 재



※ 철회요구자는 발의자가 되며 발의자가 2명이상인 경우에는 발의자 전원이 철회  
요구하여야 함.

# 「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철회

의안 번호	491
----------	-----

발의연월일 : 2019년 3월 26일

발의자 : 전석기 의원

박기재 의원

## 1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변경 사유로 철회를 요청함.

## 2. 참고사항

### ○ 관련 법령

-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

2019.02.04  
의안

# 「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 철회

2019. 3. 26. 전석기 의원 외 1인(찬성 20명)이 발의한 「서울특별시 공공미술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을 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철회하고자 합니다.

## 이 유

의안의 발의자 및 찬성자 변경 사유로 철회를 요청함.

